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44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7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규정의 “교육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1호다목).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4조).

○ 조번호 정비(안 제15조~제1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다목 중 “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법」, 「평생교육법」의 학교,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3. (생 략) 제14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3조(정의) ----------. 1. ----------. 가.·나. (제정안과 같음) 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법」, 「평생교육법」의 학교,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 2.·3.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4조 ~ 제16조 (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정책에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법」, 「평생교육법」의 학교,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청소년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자율예산"이란 청소년이 제안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출

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청소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또는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정책 제안 및 청소년자율예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평가 및 정책 제안 제출
2.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3. 청소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과 청소년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되고, 청소년 중에서도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자치구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공인시험·면접 등 진로활동

4. 본인 질병 및 사고

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견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비 등)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청소년자율예산) ① 시장은 청소년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율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청소년자율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③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하여 시 소관부서의 검토 및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투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의 내용을 위원회에 알리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위원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을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